

조선시대 의료관청의 겸교수 제도의 변화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Changes in the Adjunct professor system of medical offices in the Joseon Dynasty

PARK Hun-pyeong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o be an adjunct professor(*gyeomgyosu*) literally means to act as an instructor while also holding a different position. Adjunct professors were initially introduced under Confucianism. Gradually, technical offices also appointed adjunct professors using Confucian-educated bureaucrat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lower-level technical officials and cadets.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related to adjunct professors through the Code of Laws, and examines those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e public office described in various documents.

This paper argues that changes in the medical office's adjunct professor system reflect changes in the national medical talent training policy. The main basis of specific recognizing medical personnel is to decouple the appointment of Confucian scholars from that of full-time doctors. The replacement of the role of medical educators from Confucian scholars to full-time doctors was largely accomp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中宗) and was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Injo(仁祖). The time when *Euiyakdongcham* was created and the Office of *Euiyakdongcham* was established coincided with the period when the adjunct professor was disrupted in the medical office.

However, this change in the adjunct professor system of medical authorities is in contrast to interpreta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echnical field. In the case of interpretation, Moonshin's *sayeogwon* position as adjunct professor was maintained ev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part from this, there was a *hanhagmunsin* in *Seungmunwon*. Interpreter families ha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prevented them from making interpretation their own monopoly. Therefore, families of medical bureaucrats had more room for institutional growth than those of bureaucratic interpreters. Of course, these institutional devices did not prevent the growth of interpreting bureaucratic famil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the situation in which medicine was accepted only as a kind of knowledge, not as an object of full-time work for *sadaebue*, would have been an opportunity to rise for those in technical jobs who were full-time medicine.

As medicine became more differentiated and develop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dical knowledge and the knowledge about the medical profession became more important. The politicians could not avoid the use of a philosophically oriented system in which a confucian-educated bureaucrat equipped with only Confucian knowledge might replace a full-time doctor. Thu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ality and the ideal of ignoring or denying reality was reproduced like other Confucian-centered societies.

These contradictions have implications for us living in the modern age.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or belief) and technology should not end with the superiority of one side or the other.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Adjunct professor, Jeoneuigam, Hyeminseo, Confucian doctor, *Euiyakdongcham*

I. 서론

교수관 제도는 고려조부터 시작된 제도로 생도를 둔 중

앙과 지방의 여러 관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조선에서는 가장 먼저 유학교수관이 건국 초부터 제도화되었다.¹⁾ 이어서 1393년(태조 2)에는 지방의 각도에 의학교수가 임명되었다.²⁾ 교수관은 유학에서 시작하여 점차 역학과 의학 등의 기술 분야에 확대되었다. 겸교수란 말 그대로 본래 다른 직임을 가지면서 교수관을 겸직하는 것이다. 조

접수 ▶ 2023년 03월 06일 수정 ▶ 2023년 03월 22일 채택 ▶ 2023년 03월 22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61-330-3525 E-mail : lillipute@dsu.ac.kr

- 1) 『태조실록』 태조 1년 8월 7일 기사. “仍授各道守令、儒學教授官、驛丞本職.”
- 2) 『태조실록』 태조 2년 1월 29일 기사. “外方無通曉醫藥者、乞於各道遣醫學教授一員.”

선 전기 기술직 관청의 겸교수는 하급 기술직 관원과 생도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文臣으로 임명되었다. 천문학 지리학 의학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경국대전』을 보면 사역원은 2원의 한학교수를 문신이 겸직하도록 하였고, 헤민서는 1원의 의학교수를 문신이 겸직하도록 하였다.³⁾ 중종조에는 의학뿐 아니라 관상감의 명과학 분야에도 문신을 겸교수로 임명했다가 철회하기도 하였다.⁴⁾

기술직 관청의 겸교수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관상감의 천문학겸교수에 대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천문학겸교수는 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문신에 버금가는 학문적 소양과 가계 배경을 가진 이였다. 그들은 과거나 취재가 아닌 추천으로 선발되고, 근무 일수를 채우면 동반 종6품으로 승진되는데는 2가지 장점이 있었다.⁵⁾ 영조대에 이르러 관상감겸교수는 천문학을 업으로 삼는 이가 진출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중인 계급 출신의 관상감원들에게 있어 유용한 승진 도구가 되었다.⁶⁾ 정조대는 관상감겸교수의 임명이 추천에서 규정을 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과도기였다.⁷⁾ 이상의 제도사적인 고찰 이외에 사대부 출신의 화원 鄭叡이 천문학 겸교수를 지낸 이력도 주목받았다.⁸⁾ 이밖에 사역원의 교수에 관한 선행연구도 있었다.⁹⁾ 教誨職이라 불리는 사역원교수도 일정한 임기가 끝나면 동반직이 된다는 특전이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조선 후기의 교수직만을 다루어 문신 겸교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사역원 소속은 아니지만, 사역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漢學文臣’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한학문신은 한어능력에 재능이 있는 문신을 선발하여 국가적으로 양성하고 중국으로 사신을 가거나 조선에 온 사신을 접대하는 역할을 맡기는 제도였다.¹⁰⁾ 이 한학문신은 사대교린에 관한 문서를 관장하는 관청인 承文院에 소속되었는데, 승문원은 문신을 대상으로 이문과 한어 교육도 담당하였다.

중앙 의료관청의 겸교수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의생 교육을 다루면서 개괄적으로 일부 언급되었다.¹¹⁾ 본 연구는 의료관청의 겸교수에 대한 본격

적인 첫 연구이다. 조선 전기 의료 교육 진흥책은 태조대에는 관리 후보 집단에 치중한 반면, 태종과 세종대에 와서는 현직의 문신을 의관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의료관청의 겸교수는 이런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조선 중기를 지나면서 겸교수 제도는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의학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 변화와 기술직 중인 관료 성장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였다. 본고에서는 중앙 의료관청을 대상으로 관제 연혁 및 관력자 분석을 하려 한다. 내외원에는 겸교수 직임이 없으므로 전의감과 헤민서의 겸교수가 그 대상이다. 의료관청의 겸교수와 다른 기술직 관서의 겸교수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살펴보고, 왜 그러한 특성들이 나타났는가 해석도 시도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관제 연혁

1) 전의감겸교수

兼職 제도는 조선시대의 관제 특징으로 일찍이 주목받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선 전기 650여 개, 조선 후기 900여 개의 겸직이 존재하여 전체 동반 京職의 25-30%, 서반 外職의 70-80%가 해당이 된다.¹²⁾ 『경국대전』에서 동반겸직은 70여 개로 190여 원인데 전체 동반직 인원의 25%에 달한다.¹³⁾

의학적 소양을 갖춘 儒臣 즉 儒醫의 의관 겸직은 의학교육을 강화하고 의관의 의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찍이 주목받았다.¹⁴⁾ 1412년(태종 12) 12월, 이조에서 전의감과 헤민서의 직임은 나이와 직책이 모두 높아 맡길 만한 이를 가려 行職으로만 겸차시켰다.¹⁵⁾ 즉 의료관청의 提

3) 『경국대전 이진』 京官職 조. 관상감과 전의감의 경우는 문신의 교수 겸직 규정이 없다.

4) 『중종실록』 중종 25년 4월 30일, 5월 2일 기사.

5) 경석현. 「조선 후기 천문학겸교수의 활동과 그 의미」. 동방학지. 2016;176:131.

6) 경석현. 「조선 영조 대 천문학겸교수의 운용과 활동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2019;91:114, 149-150.

7) 경석현. 「조선 정조 대 관상감 겸교수 제도의 정비와 그 의미」. 한국사연구. 2021;193:256-257.

8) 강관식. 「겸제 정선의 천문학 겸교수 출사와 금강전도의 천문역학적 해석」. 미술사학보. 2006;27:137-194.

9) 김양수. 「조선 후기의 교회역관」. 조선시대사학보. 2003;24:79-143.

10) 이연진. 「한학문신의 친림전강 제도 연구」. 유학연구. 2022;61:115-140.

11) 예를 들어 손홍렬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198-199.

12)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 청계사학. 1987;4:99.

13) 위의 논문 p. 108.

調직은 守職이 아닌 行직으로만 임명되었다. 1434년(세종 16) 7월, 이조에서 전의감 등에 새로 겸직을 만들어 文士를 임명하도록 주청하여 시행되었다.¹⁶⁾ 儒醫가 임명되는 전의감교수 직임은 1440년(세종 22) 7월에 처음 신설되었다. 의정부에 따르면 당시 의료관청의 의원들이 의서를 사사료이 습득하여 배운 바가 고투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儒臣을 1-2명을 택하여 교수관으로 삼고, 三司(제생원, 혜민서, 전의감)의 醫生 및 4품 이하의 先進醫員을 가르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유의 출신의 겸교수는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울러 3품 이상의 의원 중에 藥理에 정통한 이를 교수관으로 같이 임명하였다.¹⁷⁾ 즉 전의감교수는 유신 1-2명과 의관 1명을 합하여 총 2-3명으로 신설되었다.

전의감 내의 內藥房이 내의원으로 개칭되면서 독립되는 시기는 1443년(세종 25)으로,¹⁸⁾ 전의감교수직이 처음 생겼을 시기 전의감의 위상은 왕실 의료까지 담당하는 조선 최고의 의료관청이었다.¹⁹⁾

원래 의학교수관 직임은 1397년(태조 6)에 지방 각도에 설치되어 운영된 것이 시초인데, 지방의 유학교수관과 명칭이 같아 혼란을 주므로 1416년(태종 16)에 醫學敎諭官으로 바뀌게 되었다.²⁰⁾ 당시 “문과 출신 6품 이상 교수관은 某官儒學敎授官이라 칭하고, 參外는 훈도관이라 칭하고 생원과 진사는 敎導官으로 의학교수관은 某道의학교유관”²¹⁾

으로 개칭되었다. 즉 당시 儒臣이 교수관이란 명칭을 사용함은 문과 출신으로 6품 이상이 전제이다. 실제 세종조 문관이 삼의사 겸관을 하는 경우 대개 六曹郎官(정5품 正郎과 정6품 佐郎)이 겸직하였다.²²⁾ 그러나 육조낭관은 본래의 업무가 많아서 의학교수관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1446년(세종 28) 의정부의 주청으로 전의감교수와 혜민국 제생원의 提學別坐를 제외한 여러 삼의사²³⁾의 겸관은 혁파되었다.²⁴⁾ 전의감 내 文臣 겸직 직제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1434년과 1446년 의료관청의 儒臣 겸직

	관청명	1434년 7월	1446년 1월
1	전의감	兼正, 兼副正 兼判官, 兼注簿 각 1인	文臣敎官 외 다른 겸직 혁파
2	혜민국	提學別坐 중 1인, 兼丞 1인	提學別坐 외 혁파
3	제생원	提學別坐 중 1인, 兼丞 1인	提學別坐 외 혁파

단종이 즉위하면서 醫司提調 이선제의 상소로 儒士 겸직관의 근무가 강화되었다. 당시 의생과 의학 관료의 질적 하락에 대한 대처로서, 유사 겸직관은 四部學堂의 예에 따라 근무하게 되었다.²⁵⁾ 문신의 전의감교수 임명은 세조 때에도 계속되었다.²⁶⁾

성종조 『경국대전』의 규정으로는 전의감의 의학교수가 2원

14) 또 다른 방안으로 의서습득관 제도의 운영이 있다. 특히 세조 때에는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면서, 25살 이하의 三官 관리와 初試 합격자를 강제적으로 차출하였다.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득관의 운영과 활동」, 연세의사학. 2019;22(1):155.

15) 『세종실록』 태종 12년 12월 4일 기사. “司譯, 典醫, 書雲, 惠民, 濟生等司, 職係非輕, 不宜用年少無才. 自今宜揀年職俱高可任者, 行職兼差.” 여기서 행수관 관품이 직사보다 높은 경우에 行職을, 낮은 경우에 守職이라 한다.

16) 『세종실록』 세종 16년 7월 25일 기사. “吏曹啓: “醫術須究如陰陽五行生克消息之理者, 乃能診 病投藥. 且古之良方, 多出儒醫之手, 則通理文人, 兼治醫術, 古有其例, 加設典醫, 兼正, 兼副正, 兼判官, 兼注簿各一, 竝以博學文士除授. 惠民局, 濟生院則提學別坐中一人, 兼丞一人, 以博學剛正勤謹文士差定.” 從之.

17) 『세종실록』 세종 22년 7월 28일 기사, “且醫員等其所讀方書, 不依師受, 私自習讀, 故不知奧義. 所學孤陋. 雖有通經書者, 以醫爲賤術, 皆不肯業醫術, 將至廢絕, 甚可慮也. 自今擇儒臣一二人, 稱爲敎授官, 三司醫生及先進醫員四品以下, 竝令敎訓. 儒臣則雖通經書, 不能兼曉藥理, 故診視命藥之法, 竝敎誨爲難. 三品醫員內, 擇其精於藥理者, 并差敎官, 一同訓誨, 每當春秋仲月取才, 考其畫數多少, 其畫多者一人, 賞職勸後.”

18) 『세종실록』 세종 25년 6월 15일 기사. “內藥房關係至重, 而以藥方稱號, 且其官員無名號, 有違古制, 請稱號內醫院, 置員十六人.” 1443년 전의감에서 내의원이 독립하면서 의관 교육은 전의감 교유 업무로 유지되었으며, 교수직도 전의감에만 존속되었다.

19) 내의원의 지위와 역할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20) 의학교유관은 1467-1469년 사이에 審藥으로 바뀌고 이 명칭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다.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 의사학회지. 2015;28(2):60-61.

21) 『태종실록』 태종 16년 8월 10일 기사. “吏曹請改音韻相近各官之號, 乃以靑州爲北靑, 襄州爲襄陽, 寧山仍古號爲天安, 甫城仍古號爲眞寶, 甫川仍古號爲禮泉, 橫川爲橫城, 報令爲報恩. 又啓: 文科出身六品以上敎授官, 稱某官儒學敎授官, 參外稱訓導官, 生員進士稱敎導. 又醫學敎授官改稱某道醫學敎諭.”

22) 『세종실록』 세종 28년 1월 29일 기사. “三醫司兼官, 以文官爲之, 欲其敎訓醫生也. 然兼任者, 率皆六曹郎官, 事務煩劇, 未暇兼治.”

23) 삼의사는 시기별로 다른데, 이 시기는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을 말한다.

24) 『세종실록』 세종 28년 1월 29일 기사. “濟生院惠民局, 俱有提學別坐, 典醫監亦有文臣敎官, 請揀擇差任, 俾掌其事, 提調以時考察, 其兼官, 竝皆革除.”

25) 겸직관은 교수직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제거와 별제가 유사겸직관이다. 『단종실록』 단종 즉위년 12월 25일 기사. “提調常坐, 考其所讀日課, 擇年少聰敏儒士數人及知醫書老醫, 爲提學別坐, 皆帶兼官敎授, 諸書每月日講, 如成均, 四部之例, 其餘中下等醫生, 分屬惠民局, 濟生院, 提調別坐常坐, 敎授講論.”

26) 『세조실록』 세조 4년 3월 11일 기사. “本曹謹奉敎旨, 凡醫書各以類分科, 擇文臣之聰敏者及醫員, 分屬諸科, 使各專治, 仍將合行事宜條錄於後. 一, 四孟月, 典醫提調本曹堂上及醫學敎授官, 會於本曹考講.”

이고 겸교수직은 따로 없다.²⁷⁾ 그러나 이러한 國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겸교수직이 혁파되었는지, 아니면 운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렇다면 중종조의 사대부 출신 전의감교수는 국전에 따라 겸교수가 아닌, 실직인 의학교수로 儒士가 임명된 것일까. 사대부들의 의학 관료에 대한 인식은 세종조 말과 성종 초기 사이 여러 의료제도상의 변화와 더불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서얼이 의학 관료 출사를 기피하였다.²⁸⁾ 그러한 상황에서 유사는 겸교수가 아닌 실직인 의학교수로 출사할 필요가 없었다.

1542년(중종 37)에는 흉년이 들어 의학교수를 임시로 줄이게 된다.²⁹⁾ 다만 이 의학교수가 겸교수직인지 의관이 임명되던 실직의 의학교수인지는 불확실하다. 이듬해 사헌부가 상소하여 “기존 법조에 ‘양의사 관원 중에 年少聰敏한 이를 서얼을 가리지 않고 혹 의학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여, 교수는 良人이 임명되어야 하므로 ‘서얼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을 빼자.”³⁰⁾고 하여 그대로 시행된다. 이 법조의 원문은 1543년(중종 38) 간행된 법령집인 『대전후속록』으로 아래의 자료이다(그림 1).³¹⁾ 여기서 의학교수직에는 서얼을 임명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즉 세종조의 의학 관료 위상에 비하여 당시 이러한 명문화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지위 하락이 있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서얼이 전의감교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겸교수직이 생겨난 초기인 세종조에는 삼의사의 겸교수는 문과출신의 육조낭관이 겸직하였다. 물론 서얼 임명을 막은 것이 해당 관직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문과 출신으로 겸직하던 직을 서얼이 임명되었으니 직임의 지위가 하락한 것이다.

또한 『대전후속록』에는 “천문학과 의학 분야에서 깨달음이 있는 이를 혹은 부제조로 혹은 겸교수로 품계에 따라 부르고, 매달 6차례 각 관청에서 상시로 근무하게 하여 가르치게 하라.”³²⁾하여 국전에 없는 겸교수관 직임을 제도적으로 보충하였다. 그러나 이후 1742년의 『속대전』에서는 전의감교수는 1원이며 겸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즉 전의감겸교수직은 국전에는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상 시기별 전의감의 문관 겸직 관제의 주요 변화는 아래와 같다(표 2). 전의감의 경우 시기에 따라 儒士가 겸교수와 교수에 모두 임명되었으며, 중종 이후로 문신 관료가 전의감겸교수로 임명되지 않았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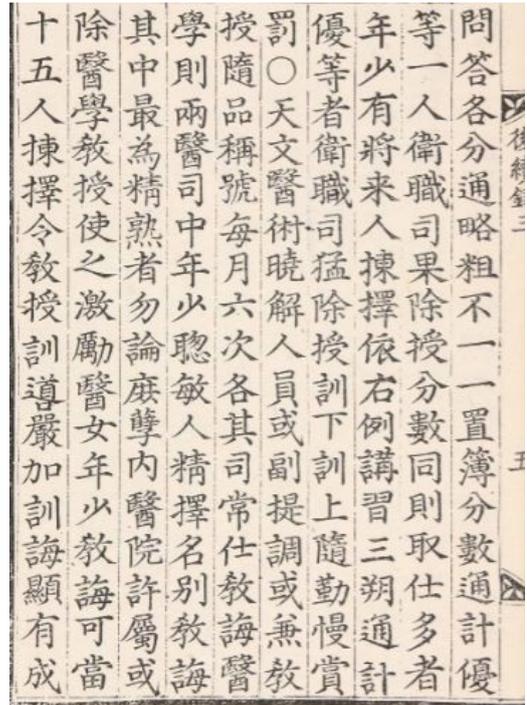


그림 1. 『대전후속록 권3 예전』 권장조 의학교수 내용(규장각 소장)

표 2. 시기별 전의감의 문관 겸직 관제 주요 변화

	시기	주요 변화
1	1434년(세종16)	典醫監兼正 등 博學文士 첫 임명
2	1440년(세종 22)	文臣교수직 신설
3	1446년(세종 28)	교수 외 文臣 겸관직 혁파
4	1452년(단종 즉위)	儒士 겸직자의 근무 강화
5	1484년(성종 15)	겸교수직 규정 없음(교수 2원)
6	1543년(중종 38)	겸교수를 隨品稱號하게 함
7	1746년(영조 22)	겸교수직 규정 없음(교수 1원)

27) 『경국대전 이전』 경관직 전의감조 “正 一員 副正 一員 僉正 一員 判官 一員 醫學教授 二員 直長 二員 奉事 二員 副奉事 四員 醫學訓導 一員 參奉 五員.”
 28) 박훈평, 오준호, 「15-16세기 조선 의학 관료의 신분 변천」, 의사학, 2018;27(3):302.
 29) 『중종실록』 중종 37년 4월 1일 기사.
 30) 『중종실록』 중종38년 7월 4일 기사. “教授以業精良人, 許通仕路, 而庶孽除授未便, 請削去 ‘或除醫學教授’ 六字.”
 31) “- 상략 - 양의사 관원 중 나이가 어리고 총민한 사람을 가려 뽑아서 별도로 가르친다. 그 중 최고로 정통한 이는 서얼이라도 관계없이. 내의 원입속을 허락하거나 혹 의학교수로 임명하여 격려한다. - 하략 -” “- 상략 - 兩醫司中 年少聰敏人, 精擇名, 別教誨. 其中最爲精熟者, 勿論庶孽, 內醫院許屬, 或除醫學教授史之激勵.. - 하략 -”
 32) 『대전후속록 권3 예전』. 獎勵조. “天文醫術, 曉解人員, 或副提調, 或兼教授, 隨品稱號, 每月六次, 各其司常仕教誨.”
 33) 본론 2의 1)에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2) 해민서겸교수

해민서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조선 건국 초에는惠民局이라 칭하였다. 해민국의 문관 겸직은 1434년(세종 16)에 처음 생겼는데, “提舉別坐 중 1인, 兼丞 1인”이었다.³⁴⁾ 이후 1446년(세종 28) 겸승 직임이 혁파되고,³⁵⁾ 1452년(문종 2)에 文臣別坐도 혁파되었다.³⁶⁾

해민서겸교수가 신설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466년(세조 12) 해민국에서 개편된 해민서 관제를 처음 정할 시기에는 겸교수 직임이 없었다.³⁷⁾ 이후 1483년(성종 14) 『실록』 기사에는 겸교수 임명 사례³⁸⁾가 나온다. 따라서 1466년과 1483년 사이에 신설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의감겸교수와 달리 해민서겸교수는 “문관이 겸직한다”고 국전인 『경국대전』에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해민서겸교수의 혁파는 전의감교수직의 혁파보다 나중인데 1637년(인조 15)에야 혁파되었다.³⁹⁾ 당시 재정 상황으로 인하여 전의감과 해민서를 합치면서 겸교수직이 없어졌는데, 이후 해민서를 전의감에서 분리하여 본래대로 환원하면서도 겸교수직은 복원되지 않았다. 1742년의 『속대전』에서는 “해민서교수는 1원이며 문관이 겸하던 겸교수직은 減해졌다.”고 기록되었다. 이상 시기별 해민국과 해민서의 문관 겸직 관제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시기별 해민국과 해민서의 문관 겸직 관제 주요 변화

	시기	주요 변화
1	1434년(세종16)	提舉別坐 1인, 兼丞 1인 문관 임명
2	1446년(세종 28)	兼丞 혁파
3	1452년(단종 즉위)	文臣別坐 혁파
4	1466-1483년 사이	교수직 신설
5	1484년(성종 15)	문관교수 1원(교수 2원)
6	1543년(중종 38)	교수직 良人만 임명
7	1637년(인조 15)	겸교수 혁파

34) 『세종실록』 세종 16년 7월 25일 기사.

35) 『세종실록』 세종 28년 1월 29일 기사.

36) 『문종실록』 문종 2년 4월 2일 기사. “惠民局別坐二, 汰文臣別坐一.”

37) 『세조실록』 세조 12년 1월 15일 기사.

38) 『성종실록』 성종 14년 10월 23일 기사.

39) 『승정원일기』 인조 15년 4월 20일 기사. “計板蕩, 務汰冗官, 而醫監惠民署, 合爲一局, 專爲救活人命也.” 인조 15년 7월 14일 기사. “惠民署復設事, 前已允下. 該署提調, 當爲差出, 而醫司提調, 皆二員, 而今若準數差出, 則恐殘署難支之患. 令該曹, 只出一員, 兼教授, 不必差出.”

40) 崔自濱은 『세종실록』의 원문에 ‘醫學教授’로 나온다. 해민서겸교수는 1466년 당시에 없었으므로 전의감교수로 추정된다. 權攢은 『세종실록』 원문을 보면 ‘兼教授’라고만 나오는데 의서습독관 출신으로 의서습독관은 당시 전의감 소속이므로 이 겸교수직도 전의감겸교수로 추정된다. 安瓚은 『중종실록』 원문을 보면 ‘教授’라고만 나오지만 전의감 제조 安瑒의 추천을 받았으므로 전의감교수로 추정된다. 裴珣은 『嘉靖二十八年己酉九月初九日司馬榜目』가 전거이고 나머지는 실록이 전거이다.

41)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137, 176, 251, 327, 351, 431, 455, 574, 575.

2. 겸교수 관력자

1) 전의감겸교수

조선 전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전의감교수 관력자는 아래와 같이 4명이다(표 4).⁴⁰⁾ 문헌상에 ‘教授’로 기록된 이들도 내용을 살펴보면 ‘兼教授’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례가 적어서 일반화된 이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향성은 보이는데, 성종 이전의 의학교수 전력자들은 사마시나 문과 출신의 신분이었으나 중종 이후로는 의관이거나 기존의 이력 확인이 어려운 이들이다.

표 4. 조선 전기 전의감교수 목록

	이름	임명시기	先系	科擧	官歷
1	崔自濱	1466.6.2.	父 文府使	문과	正
2	權攢	1467.11.17.	父 文좌찬성	司馬	판서
3	安瓚	1518.3.10.	-	-	전의감주부
4	裴珣	중종조	-	-	-

조선 후기 전의감교수의 목록을 보면 9명 모두 의관 가계 출신의 의관이다(표 5).⁴¹⁾ 국전에 전의감은 6품 이상은 과거에 합격한 이로 제한을 두는데, 실제로 모두 의과 출신이다. 영조대 『속대전』의 규정을 보면 전의감교수는 조선 전기와 달리 1원이었다. 이상 전력자를 살펴보면 중종 이후로 문신 관료 출신은 전의감교수나 겸교수로 임명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전의감교수는 의관 가계 출신의 전업 의학관료로만 임명되었다.

표 5. 조선 후기 전의감교수 목록

	이름	임명시기	先系	科擧	官歷
1	李怡	1624.11.8	父 壽學	의과	전의감교수
2	李壽祺	1725.3.20	父 僉知	의과	의약동참 찰방
3	鄭允集	1781.3.12	조부 同參	의과	전의감첨정
4	朴烜	1795.6.18	父 內醫	의과	내의원첨정
5	安宗錫	1820.9.4	父 同參	의과	내의원정
6	玄光德	1864.8.	父 內醫	의과	전의감첨정
7	玄鍵	1864.8.	父 外醫	의과	전의감첨정
8	南基嫻	고종조	父 外醫	의과	전의감판관
9	田宜龍	고종조	父 醫科	의과	전의감첨정

2) 헤민서겸교수

조사된 헤민서겸교수 관력자는 총 16명으로 아래와 같다 (표 6). 전의감겸교수와 비교하자면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문과출신으로만 임명되었다. 특히 인조 때의 겸교수 임명자들은 아버지도 문과 출신의 동반 전력자가 많다. 이들은 겸교수 이후 관력에서도 모두 참판직 이상의 고위직 직임에 임명되었다. 중종조에 전의감겸교수는 의관 출신이 임명되는 등 다소 성격이 변한 반면 헤민서겸교수의 경우 사대부로만 임명되었다.

표 6. 조선 전·후기 헤민서교수 목록

성종						
	이름	任命	先系	前歷/後歷	科擧	典據
1	鄭孝終	1483.10.23	父文 사예	正/참의	文	實
2	黃玗	1486.1.21.	-	-	文	實
3	趙枰	1489.3.17.	父文 헌남	전적/-	文	實
중종						
	이름	任命	先系	前歷/後歷	科擧	典據
1	南褒	1520.3.3.	-	좌랑/직제학	文	實
2	金匡復	1522.7.16. -8.19	-	정언/-	文	實
3	朴元謙	1534.11.20	-	군수/ 사예	文	實
4	黃孝恭	1537.6.24.	-	사간/-	文	實
5	朴自英	1542.3.28.	父文 정랑	- /정랑	文	實
선조						
	이름	任命	先系	前歷/後歷	科擧	典據
1	閔慶基	1605.9.30.	父충의위	정랑/교리	文	實
2	鄭豈	1612.5.19.	-	舍人/참판	文	實
3	金瞻	선조조	父文 전한	교리/현감	文	榜目
인조						
	이름	任命	先系	前歷/後歷	科擧	典據
1	趙翼	1623.9.13	父 주부	정랑/領相	文	承
2	李敬輿	1625.7.3.	父文 목사	전한/영상	文	承
3	李昭漢	1629.7.21	父 左相	헌남/참판	文	承
4	崔惠吉	1630.2.9.	父文 부사	수찬/참판	文	承
5	鄭太和	1633.6.22/ 1636.7.18	父文 판서	좌랑/영상	文	承

42) 경석현. 앞의 논문. p. 131.

43) 경석현. 위의 논문. p. 132-133.

3) 小考

전의감겸교수는 문과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문과 출신이 아닌 사대부 출신으로 임명되던 천문학겸교수직과 다르다.⁴²⁾ 겸교수직의 도입과 활용 시기를 보자면 의학과 천문학 모두 다른 기술 관련 잡학들에 비해서 지배층에게 분명 중시되었다. 그러나 겸교수의 출신 배경으로 의학과 천문학만 비교하자면 의학이 천문학에 비하여 더 중시된 셈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여러 잡학을 儒臣들에게 배우게 하고 습득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직에 정통한 儒子 관료들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대부 출신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천문학겸교수 제도가 주목되는데,⁴³⁾ 전의감겸교수에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조선 후기 기술직 관청의 겸교수제도는 유명무실화된 잡학 습득관 제도와 달리 계속적으로 제 기능을 하였다. 천문학겸교수가 특히 그러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 이후로 전의감겸교수 임명 사례가 없다는 점은 이를 대체할만한 다른 무언가, 즉 같은 역할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거나, 상황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조선 후기 천문학겸교수가 영조 대 이후 천문학 本業人의 주요한 출사 수단이 됨과 달리, 전의감겸교수는 그러한 경향이 없다. 이는 최상위 의료관청이 전의감이 아닌 내의원이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술직 중인 계급의 성장에 따른 우대는 의학 관료의 경우 전의감과 헤민서가 아니더라도 내의원 의관들을 통하여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加差內醫가 그 사례이다. 가차내의는 ‘加差’라는 말처럼 정원 외에 더 임명하는 내의로 정조 이후 시기에 처음으로 임명되었다. 가차내의의 상설화는 12원으로 국전에 정해져 있던 내의의 정원을 추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숙종조 이후 관상감의 겸교수나 도화서겸교수를 士族이 아닌 본업인 중에서 임명하게 되면서 국전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기술직 정원의 확대를 가져왔던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 밖에도 의약동참의 또는 내침의에 입속하여 30개월이 지나면 虛司果에 임용하는 관례도 이런 사례가 될 것이다.⁴⁴⁾

의관과 역관은 조선 후기 기술직 중인 가문의 성장을 보여주는 두 집단이다. 그런데 문신의 활용에 있어 역관은 의관과는 다른 제도가 있었다. 먼저 문신 중에서 한어능력이 뛰어난 이를 선발했던 한학문신은 역할에 있어서는 사역원 역관과 유사하지만 출신 성분이 달랐다. 조선 전기부터 한

어에 뛰어난 문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 영조대에 제도적으로 재정비되었으며, 고종대에 법령집에 명문화되었다. 영조대의 『전강등록(殿講謄錄)』을 보면 한학 문신은 문신을 대상으로 하는 오경(五經) 구술시험 방식을 답습하여 시험을 보았다.⁴⁵⁾ 조선 전기에 여러 잡학에 문신을 활용하고자 했던 정책은 의학과 천문학의 경우 퇴보하였는데 역학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한학문신 뿐 아니라,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던 문신의 사역원겸교수직 2원도 조선 후기 그대로 유지되었다.⁴⁶⁾

실제 사무에 있어 헤민서교수와 전의감교수의 업무는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헤민서교수는 聰敏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과 온갖 시험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⁴⁷⁾ 전의감겸교수는 의학생도 및 의원들을 가르치고,⁴⁸⁾ 의원의 취재에 관여하였다.⁴⁹⁾ 그럼에도 헤민서겸교수를 전의감겸교수와 달리 문과 출신으로 임명한 까닭은 무엇보다 國典에 명확하게 겸교수를 文官으로 임용하라는 규정 때문일 것이다. 전의감겸교수는 상황에 따라 국왕의 수교로서 儒臣을 임명한 것이고 국가 법전에는 근거가 없었다. 앞서 살폈듯이 세종조 문관이 三醫司겸관을 하는 경우 대개 六曹郎官 출신이 겸직하였는데,⁵⁰⁾ 헤민서겸교수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이 헤민서겸교수 제도가 혁파되던 인조시기까지 이어졌다. 참고로 四部學堂의 겸교수 즉 유학겸교수는 대과 급제자가 현재 알려진 인원 1382명의 98.6%인 1363명에 달한다. 이들의 본직은 대개 5-6품으로서 80.8%에 달하였다.⁵¹⁾ 헤민서겸교수의 출신은 유학겸교수와 유사한 셈이다.

국전의 규정 외에 전의감과 헤민서 관청 자체의 성격도 관련된 듯하다. 전의감은 의과 시험을 주관하는 관청으로 의과 출신자들이 많이 종사하였다.⁵²⁾ 전의감과 헤민서의 의학생도는 예비 의료 관료라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두 관청

생도의 가계 배경은 정3품 衙門과 종6품아문이라는 점에서 전의감 생도가 헤민서생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였다.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1882년 12월 헤민서와 전의감 통합 시에 헤민서의 의학생도들은 다시 전의감의 完薦제를 거쳐서 일부인 5명만 전의감의 의학생도가 되었다.⁵³⁾ 전의감은 의과 시험을 주관하고, 의학생도의 가계 배경도 헤민서보다 더 우월한 점 등으로 볼 때, 헤민서 겸교수보다 전의감 겸교수에게 더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醫書習讀官이 전의감에 배속된 점은 전의감겸교수의 역할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세종 때에 설치된 의서습독관은 조선 전기 의료관청의 겸교수처럼 유의의 의관직 入仕路로 활용되었다. 다만 의서습독관은 문과에 합격하고 實職을 받지 못한 權知에게 주어지는 자리이므로, 겸교수와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 전자는 문관 권지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면서 의학적 소양을 갖춘 젊은 관료를 양성하려는 의도였다.⁵⁴⁾ 후자는 이미 유의로 검증된 인물로서 그로 인하여 별도의 의관직 정원이 추가되지 않았다. 의서습독관은 국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종대 이후로는 유명무실화되었다. 전의감 겸교수도 이와 유사하게 중종조에 혁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15세기 후반 정도면 의학교육자 역할이 유의에서 전업 의사로 역할 전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⁵⁵⁾ 인조대 헤민서겸교수직의 혁파는 역할 전환의 완성을 보여준다.⁵⁶⁾

의료관청의 겸교수 제도 변화는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 의료 인력의 주요 근간이 유학자에서 전업 의사로 바뀌어가는 양상이다. 의료관청 겸교수 제도의 신설과 혁파는 의서습독관 제도 관련하여 논의된 이른바 通儒論과 職分論의 대립으로 해석될 수 있다.⁵⁷⁾ 통유론은 儒자가 모든 부분을 담당하자는 논리로서 의학 분야에서는

44) 박훈평,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사학회지, 2022;35(1):45-58.

45) 김양수, 앞의 논문, p. 119-122.

46) 『승정원일기』 순조 2년 12월 13일 기사, “兼漢學教授單金邁淳·洪奭周”라 하여 2원의 겸교수 임명 내용이 있다. 1720년에 초간되어 19세기 후반까지 개수본이 나온 『通文館志 권1』 관제조에도 2원은 문신이 겸한다고 규정되었다.

47) 『해국지 연혁』 관제조, “掌敎訓聰敏及凡諸課講等事.” 『해국지』는 1778년(정조 2)에 완성된 헤민서 관청지이다.

48) 『세종실록』 세종 22년 7월 28일 기사,

49) 『세조실록』 세조 4년 3월 11일 기사.

50) 『세종실록』 세종 28년 1월 29일 기사, “三醫司兼官, 以文官爲之, 欲其敎訓醫生也. 然兼任者, 率皆六曹郎官, 事務煩劇, 未暇兼治.”

51) 박영미, 정상준, 「사학겸교수선생안 분석」, 교육사학연구, 2019;29(2):39, 46.

52) 전의감주부 이상은 의과 출신자로 규정되어있으나, 헤민서의 경우는 의과 출신이 아니어도 취재만으로 모든 직임에 임명이 가능하였다.

53)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2013;26(1):3. 기술관서의 완천제는 천거 절차에 따라 각 관서의 생도가 되는 과정이었다.

54) 의서습독관은 종8품, 종9품, 종9품의 체아직으로 구성되었다. 이경록, 앞의 논문 p. 155-156, 160.

55) 1440년(세종 22)에 약리에 정통한 3품 의원을 교관으로 차임하도록 하고, 1452년(단종 즉위)에 李先齊가 의생으로 하여금 의서에 밝은 老醫에게 강의받도록 건의함이 그 사례이다. 또한 의관들이 15세기부터 의서 편찬자로 활약함도 그 증례이다. 이경록, 「조선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연세의사학, 2020;23(1):27-28.

56) 의료관청의 제조직은 고위 문신 관료의 겸직으로 남았다.

유의를 양성하여 활용하자는 입장이며, 직분론은 의학은 雜技로서 자신들의 직분에 맞지 않으므로 구분하자는 입장이다.⁵⁸⁾ 그런 점에서 보면 인조 때까지 지속된 헤민서겸교수직은 조선 전기 통유론의 유산일 것이다. 조선 후기의 議藥同參醫는 통유론을 계승하는 면이 있다. 議藥同參廳은 內醫廳과 鍼醫廳과 더불어 내의원 산하 3청 중 하나로, 外方醫 중에 실력 좋은 藥醫들이 의관으로 임명되어 어의로서 활동하였다. 의약동참 명부인 『議藥同參先生案』을 통하여 17-19세기 의약동참의의 가계를 살펴보면 사족 출신이 17세기 11명, 18세기 20명, 19세기 14명에 이른다.⁵⁹⁾ 의약동참청은 공식적으로 1673년(현종 14)에 설치되었지만, 효종 연간인 1653년에 이미 의약동참 직임으로 불리는 의관들이 나온다.⁶⁰⁾ 이 들 중 鄭後啓 같은 이는 진사시 출신의 유의였다. 의약동참의가 생겨나고 의약동참청이 설립된 시기는 의료관청에서 겸교수직이 혁파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의학이 분화되고 발달함에 따라 의학 지식과 의업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유학적 소양만을 갖춘 보통의 문신이 전업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위정자들이 오히려 철학적 제도로 회피하면서 현실을 외면, 부정하는 유교 중심 사회의 일반론적인 모순도 겸교수 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전개에서 일견 드러난다.⁶¹⁾

III. 결론

본고를 통하여 의료관청의 겸교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겸교수란 말 그대로 본래 다른 직임을 가지면서 교수관을 겸직하는 것이다. 겸교수관은 처음에는 유학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조선 전기 기술직 관청에서 하급 기술직 관원과 생도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문신을 활용하여 임명하였다. 태종대와 세종대에 문신의 의료관청에서의 활용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전의감과 헤민서겸교수에 초점을 두고 법전 등을 통하여 관제 연혁을 살펴보고, 여러 문헌에 기재된 관력자를 조사하였다. 이후 다른 기술직 관

서의 겸교수와 차이점 및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논지를 도출해냈다.

의료관청의 겸교수 제도 변화는 국가 의료 인력 양성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다. 의료 인력의 주요 근간이 유학자에서 전업 의사들로 바뀌어가는 양상이다. 유의에서 전업 의사로 의학교육자 역할 대체는 중종조에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인조조에 완성되었다. 전의감겸교수 제도는 중종조에 혁파되었고, 헤민서겸교수는 인조조에 혁파되었다. 의약동참의가 생겨나고 의약동참청이 설립된 시기는 의료관청에서 겸교수직이 혁파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그런데 의료관청의 겸교수 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대표적인 기술직 학문인 역학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역학의 경우 조선 후기에도 문신의 사역원겸교수 겸직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승문원에도 한학문신이 있었다. 역관 가문은 역학을 그들만의 독점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다. 그렇기에 의관 가문이 역관 가문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컸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조선 후기 역관 가문들의 성장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다만 의학이 사대부에게 전업의 대상이 아닌 일종의 소양으로서만 받아들여지는 상황은 의학을 전업으로 하는 기술직 중인에게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의학이 분화되고 발달함에 따라 의학 지식과 의업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중요해졌다. 유학적 소양만을 갖춘 보통의 문신이 전업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위정자들이 오히려 철학적 제도로 회피하면서 현실을 외면, 부정하는 유교중심 사회의 일반론적인 모순도 겸교수 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전개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모순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철학(내지 신념)과 기술의 관계 설정은 어느 한 일변의 우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1. 강관식. 「겸재 정선의 천문학 겸교수 출사와 금강전도의

57)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득관의 운영과 활동」. 연세의사학. 2019;22(1):170.

58) 이경록. 「조선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연세의사학. 2020;23(1):18-30.

59)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2018;39:225-226.

60) 『승정원일기』 효종 4년 윤6월 9일, 윤7월 21일 기사에 나오는 李祉述, 李暹, 柳後聖, 鄭後啓가 그 사례이다.

61) 이는 본고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본고의 논지를 충실하게 만들어준 좋은 지적에 감사를 표한다.

- 천문역학적 해석]. 미술사학보. 2006;27:137-194.
2. 경석현. 「조선후기 천문학겸교수의 활동과 그 의미」. 동방학지. 2016;176:121-152.
 3. 경석현. 「조선 영조 대 천문학겸교수의 운용과 활동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2019;91:113-153.
 4. 경석현. 「조선 정조 대 관상감 겸교수 제도의 정비와 그 의미」. 한국사연구. 2021;193:221-260.
 5. 김양수. 「조선후기의 교회역관」. 조선시대사학보. 2003;24:79-143.
 6. 박영미, 정상준. 「사학겸교수선생안 분석」. 교육사학연구. 2019;29(2):27-55.
 7. 박훈평. 「19세기 후반 전의감 의학생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3;26(1):1-7.
 8.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직 심약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5;28(2):59-72.
 9. 박훈평. 『조선시대 의관총목록』.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8.
 10. 박훈평, 오준호. 「15-16세기 조선 의학 관료의 신분 변천」. 의사학. 2018;27(3):295-322.
 11. 박훈평. 「조선후기 의약동참과 내침의 신분 연구」. 장서각. 2018;39:208-234.
 12. 박훈평. 「조선후기 내의원 의관의 직임과 인사」. 한국 의사학회지. 2022;35(1):45-58.
 13.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 연구』. 서울:수서원. 1988.
 14. 이경록. 「조선초기 의서습독관의 운영과 활동」. 연세의사학. 2019;22(1):145-180.
 15. 이경록. 「조선초기 의료진흥정책의 전개」. 연세의사학. 2020;23(1):7-36.
 16. 이연진. 「한학문신의 친림전장 제도 연구」. 유학연구. 2022;61:115-140.
 17.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 청계사학. 1987;4:99-136.
 18. 강위빙. 변태항(1778). “惠局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3.1.3.)
 19. 김재로(1746). “續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3.1.3.)
 20. 김지남(1720-19세기 후반). “通文館志”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3.1.3.)
 21. 승정원(1623-1894).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3.1.3.)
 22. 실록청(1413-1935).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3.1.3.)
 23. 윤은보(1469). “大典後續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3.1.3.)
 24. 최항, 노사신, 서거정(1474). “經國大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 원문자료검색(2023.1.3.)